학교 운영 위원회 회의 결과

1. 개최 일시 : 2021. 01. 28.(목)
2. 개최 장소 : 변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회의 실시
3. 운영위원회 참석자: 7명/7명
4. 심의 내용

안건 번호	심의안건	심의결과	심의내용
1	교직원 임용·복무·인사 규칙의 수정 변경(안)	수정가결	- 학교 재규정 교직원 임용·복무·인사 규칙 제 5조 2항 신규교사 선발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로 변경 - 학교 재규정 교직원 임용·복무·인사 규칙 제 5조 5항 임기의 변경: 초빙교원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초 1년의 업무 평가에 따라 남은 2년의 임기를 결정한다. 단, 학기중 계약의 경우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현지채용교원의 경우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. - 학교 재규정 교직원 임용·복무·인사 규칙 제 6조 1항 재임용의 변경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은 매년 교사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1년씩 3년의 범위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시 연장할 수 있다. 재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다시 공개채용에 의해 신규 임용할 수 있다. - 학교 재규정 교직원 임용·복무·인사 규칙 제 7조 1항 기간제 교사를 대체교사로 변경: 학교장은 교사의 휴직, 면직 등의 사유로 인해 결원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결원에 대한 대체교사(기간제 교사)를 임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시적으로 시간강사 채용후에는 5조의 절차에 따라 신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. - 학교 재규정 교직원 임용·복무·인사 규칙 제 7조 2항 의 수정: 대체교사(기간제교사)에 대하여는 제 4조 내지 제 5조, 제 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임용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.

2021. 1. 28.

리야드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